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A78BL)
[국민주택(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746번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A78BL)
- 공급대상 : 아파트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총 13개동,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전용면적 74㎡, 84㎡) 1,1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경기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국민주택 (공공분양)	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5.09.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4.11.09.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3년	적용	공공택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5.09.(금)	'25.05.19.(월)	'25.05.20.(화)	'25.05.21.(수)	'25.05.29.(목)	'25.06.01.(일)~ '25.06.09.(월)	'25.07.19.(토)~ '25.07.27.(일)

※ 국민주택 신청 주의사항

-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은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입니다.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 주택형
국민주택 전용면적 74㎡, 84㎡ (본 입주자모집공고 적용)

-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은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031-373-1780)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 등)에 따른 금리인상,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중도금 대출 불가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시 지정한 중도금일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도금 대출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하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LH 청약플러스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종전 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5.05.08.)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9.)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5.09.(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입니다.
-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147**이며, 이 공고문은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 홈페이지(https://동탄꿈의숲자연앤데시앙.com)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관람 안내**
 - 건본주택 내 건본세대는 74B, 84A, 84B타입이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되지 않은 74A, 84A1, 84C, 84D타입 및 건본주택 관람이 어려운 분들에게서는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 홈페이지(https://동탄꿈의숲자연앤데시앙.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관람 일정	주 소	기 타
건본세대 74B, 84A, 84B 타입	'25.05.09.(금) ~ 05.21.(수) (10:00 ~ 17:00)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47-5	* 기간 내 주말, 공휴일 관람 가능 *관람 및 상담 시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31-373-1780

- **청약 전 반드시 건본주택(홈페이지 포함) 내 실제 건립 세대 촬영 영상 및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실물 건본 세대를 관람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 건본주택 운영 안내사항
 - 상기 '건본주택 관람 일정' 및 당첨자발표일 이후 서류접수기간 등 사업주체가 별도 안내한 기간 및 대상자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이 가능합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기간 및 계약체결 기간 등의 경우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하여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 홈페이지(https://동탄꿈의숲자연앤데시앙.com)를 통한 사전 예약 후 건본주택 방문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건본주택 방문이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 홈페이지(https://동탄꿈의숲자연앤데시앙.com)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 내 전시된 단위세대(건본세대, 세대VR, 모형 등)는 발코니 확장형 기준입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 홈페이지(https://동탄꿈의숲자연앤데시앙.com)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타입별 평면도, 세대 VR 등 상품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입니다.
 - 사업주체 : 공공시행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 민간사업자 - (주)태영건설, 우미건설(주), 극동건설(주)
- 본 아파트의 브랜드명은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명을 말함)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2 -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당첨 및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접수 또는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 일정의 경우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 홈페이지(https://동탄꿈의숲자연앤데시앙.com) 또는 청약 시 입력하신 연락처, 주소 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며, 연락처, 주소 오류 기재 또는 변경 시 즉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서면 등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분양사무실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상증서	1. 공급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2. 발코니확장 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 : 도급 증서(계약서 1통마다 납부)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증서에 대한 인지세 별도 납부					
납부기한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					
납부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금액	계약서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며, 분양 계약체결 후 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수분양자가 먼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한 뒤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인지세 분담액(인지세의 1/2)을 분양계약자의 아파트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발코니확장 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과세기준(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도급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며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계약서 1통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공급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최종 전매계약서는 각각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전매할 때마다 인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 및 인지세 분담액(1/2)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 바랍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APT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으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주체는 부적격으로 의심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 홈페이지(https://동탄꿈의숲자연앤데시앙.com) 등을 참고하시어 자격검증 서류 제출 및 계약 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당첨자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무순위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청약과열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의 배우자가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신고일 전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혼인특례] 신혼부부 특별공급(예비신혼부부 제외)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신고일 전인 경우에는 본인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당첨 가능합니다. (혼인특례 사용하여 청약신청)
-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공급유형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공급유형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기관추천 확정대상자(당첨예정자)는 불가)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치,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치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 해지를 이미 신청한 종전 저축으로는 청약불가)

I 공급 규모 · 공급대상 ·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746번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A78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총 13개동,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 1,170세대(특별공급 876세대, 일반공급 294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형	주택 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발코니 확장 여부	세대별 대지 지분 (㎡)	공급세대수								최고 층수	최하층 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신생아	국가 유공자					기관 추천
국 민 주 택	합 계										1,170	117	117	176	58	234	58	116	294	20	49	2028년 06월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통보)
	074.6365A	74A	74.6365	24.5424	99.1789	6.3413	47.8557	153.3759	확장	62.2118	234	24	24	36	12	48	12	27	51	20	10	
	074.7733B	74B	74.7733	25.0421	99.8154	6.3529	47.9434	154.1117	확장	62.3258	160	16	16	24	8	32	8	14	42	20	8	
	084.0000A	84A	84.7621	27.3352	112.0973	7.2016	54.3481	173.6470	확장	70.6518	474	48	48	72	24	96	23	45	118	20	9	
		84A1	84.7294	27.3064	112.0358	7.1988	54.3271	173.5617	확장	70.6245									20	7		
	084.9530B	84B	84.9530	27.3032	112.2562	7.2179	54.4705	173.9446	확장	70.8109	208	21	21	32	10	42	12	20	50	20	11	
	084.8448C	84C	84.8448	27.9221	112.7669	7.2086	54.4011	174.3766	확장	70.7207	20	2	2	3	1	4	0	1	7	20	1	
	084.7828D	84D	84.7828	27.9346	112.7174	7.2033	54.3614	174.2821	확장	70.6690	74	6	6	9	3	12	3	9	26	19	3	

- ※ [중요] 084.0000A 주택형은 84A, 84A1 주택 타입으로 혼합되어 있으며, 각 주택타입 및 동,호는 당첨자 선정시 무작위로 배정되고, 분양가는 타입별, 층별 등에 의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 홈페이지 (https://동탄꿈의숲자연앤데시앙.com)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택형 구분은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 홈페이지(https://동탄꿈의숲자연앤데시앙.com), 각종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무상귀속(기부채납),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타입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별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타입)의 최상층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2028년 6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주택타입별 구분 및 그에따른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견본주택,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 홈페이지(<https://동탄꿈의숲자연앤데시앙.com>)에서 내용을 미리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제기를 사업주체에 하실 수 없습니다.

3. 공급금액(balconi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원, 세대]

주택형	주택 타입	층별	세대수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60%)						잔금 30% 입주시 (주택도시기금 제외금액)	
						1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2025.11.20.	2026.06.22.	2027.01.20.	2027.08.23.	2027.11.22	2028.02.21.	(주택도시기금 제외금액)	주택도시기금
074.6365A	74A	1층	10	기본형	459,10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62,730,000	75,000,000
		2층	10	기본형	464,0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64,200,000	75,000,000
		3층	12	기본형	468,800,000	46,880,000	46,880,000	46,880,000	46,880,000	46,880,000	46,880,000	46,880,000	65,640,000	75,000,000
		4층	12	기본형	473,600,000	47,360,000	47,360,000	47,360,000	47,360,000	47,360,000	47,360,000	47,360,000	67,080,000	75,000,000
		5-9층	60	기본형	478,500,000	47,850,000	47,850,000	47,850,000	47,850,000	47,850,000	47,850,000	47,850,000	68,550,000	75,000,000
		10층이상	130	기본형	483,300,000	48,330,000	48,330,000	48,330,000	48,330,000	48,330,000	48,330,000	48,330,000	69,990,000	75,000,000
074.7733B	74B	1층	8	기본형	457,400,000	45,740,000	45,740,000	45,740,000	45,740,000	45,740,000	45,740,000	45,740,000	62,220,000	75,000,000
		2층	8	기본형	462,300,000	46,230,000	46,230,000	46,230,000	46,230,000	46,230,000	46,230,000	46,230,000	63,690,000	75,000,000
		3층	8	기본형	467,100,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65,130,000	75,000,000
		4층	8	기본형	471,900,000	47,190,000	47,190,000	47,190,000	47,190,000	47,190,000	47,190,000	47,190,000	66,570,000	75,000,000
		5-9층	40	기본형	476,700,000	47,670,000	47,670,000	47,670,000	47,670,000	47,670,000	47,670,000	47,670,000	68,010,000	75,000,000
		10층이상	88	기본형	481,500,000	48,150,000	48,150,000	48,150,000	48,150,000	48,150,000	48,150,000	48,150,000	69,450,000	75,000,000
084.0000A	84A	1층	9	기본형	518,900,000	51,890,000	51,890,000	51,890,000	51,890,000	51,890,000	51,890,000	51,890,000	80,670,000	75,000,000
		2층	9	기본형	524,400,000	52,440,000	52,440,000	52,440,000	52,440,000	52,440,000	52,440,000	52,440,000	82,320,000	75,000,000
		3층	20	기본형	529,90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83,970,000	75,000,000
		4층	20	기본형	535,300,000	53,530,000	53,530,000	53,530,000	53,530,000	53,530,000	53,530,000	53,530,000	85,590,000	75,000,000
		5-9층	100	기본형	540,800,000	54,080,000	54,080,000	54,080,000	54,080,000	54,080,000	54,080,000	54,080,000	87,240,000	75,000,000
		10층이상	196	기본형	546,200,000	54,620,000	54,620,000	54,620,000	54,620,000	54,620,000	54,620,000	54,620,000	88,860,000	75,000,000
	84A1	1층	7	기본형	518,600,000	51,860,000	51,860,000	51,860,000	51,860,000	51,860,000	51,860,000	51,860,000	80,580,000	75,000,000
		2층	7	기본형	524,100,000	52,410,000	52,410,000	52,410,000	52,410,000	52,410,000	52,410,000	52,410,000	82,230,000	75,000,000
		3층	8	기본형	529,600,000	52,960,000	52,960,000	52,960,000	52,960,000	52,960,000	52,960,000	52,960,000	83,880,000	75,000,000
		4층	8	기본형	535,0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85,500,000	75,000,000
		5-9층	40	기본형	540,500,000	54,050,000	54,050,000	54,050,000	54,050,000	54,050,000	54,050,000	54,050,000	87,150,000	75,000,000
084.9530B	84B	1층	11	기본형	519,700,000	51,970,000	51,970,000	51,970,000	51,970,000	51,970,000	51,970,000	51,970,000	80,910,000	75,000,000
		2층	11	기본형	525,100,000	52,510,000	52,510,000	52,510,000	52,510,000	52,510,000	52,510,000	52,510,000	82,530,000	75,000,000
		3층	11	기본형	530,60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84,180,000	75,000,000
		4층	11	기본형	536,100,000	53,610,000	53,610,000	53,610,000	53,610,000	53,610,000	53,610,000	53,610,000	85,830,000	75,000,000
		5-9층	55	기본형	541,500,000	54,150,000	54,150,000	54,150,000	54,150,000	54,150,000	54,150,000	54,150,000	87,450,000	75,000,000
		10층이상	109	기본형	547,0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89,100,000	75,000,000
084.8448C	84C	1층	1	기본형	516,800,000	51,680,000	51,680,000	51,680,000	51,680,000	51,680,000	51,680,000	51,680,000	80,040,000	75,000,000
		2층	1	기본형	522,20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81,660,000	75,000,000
		3층	1	기본형	527,700,000	52,770,000	52,770,000	52,770,000	52,770,000	52,770,000	52,770,000	52,770,000	83,310,000	75,000,000
		4층	1	기본형	533,100,000	53,310,000	53,310,000	53,310,000	53,310,000	53,310,000	53,310,000	53,310,000	84,930,000	75,000,000
		5-9층	5	기본형	538,600,000	53,860,000	53,860,000	53,860,000	53,860,000	53,860,000	53,860,000	53,860,000	86,580,000	75,000,000
		10층이상	11	기본형	544,0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88,200,000	75,000,000
084.7828D	84D (1,4호)	1층	2	기본형	501,100,000	50,110,000	50,110,000	50,110,000	50,110,000	50,110,000	50,110,000	50,110,000	75,330,000	75,000,000
		2층	2	기본형	506,40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76,920,000	75,000,000
		3층	2	기본형	511,600,000	51,160,000	51,160,000	51,160,000	51,160,000	51,160,000	51,160,000	51,160,000	78,480,000	75,000,000
		4층	2	기본형	516,900,000	51,690,000	51,690,000	51,690,000	51,690,000	51,690,000	51,690,000	51,690,000	80,070,000	75,000,000
		5-9층	10	기본형	522,20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81,660,000	75,000,000
		10층이상	20	기본형	527,500,000	52,750,000	52,750,000	52,750,000	52,750,000	52,750,000	52,750,000	52,750,000	83,250,000	75,000,000
	84D (2,3호)	1층	1	기본형	516,600,000	51,660,000	51,660,000	51,660,000	51,660,000	51,660,000	51,660,000	51,660,000	79,980,000	75,000,000
		2층	1	기본형	522,0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81,600,000	75,000,000
		3층	2	기본형	527,500,000	52,750,000	52,750,000	52,750,000	52,750,000	52,750,000	52,750,000	52,750,000	83,250,000	75,000,000
		4층	2	기본형	532,900,000	53,290,000	53,290,000	53,290,000	53,290,000	53,290,000	53,290,000	53,290,000	84,870,000	75,000,000
		5-9층	10	기본형	538,300,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86,490,000	75,000,000
		10층이상	20	기본형	543,800,000	54,380,000	54,380,000	54,380,000	54,380,000	54,380,000	54,380,000	54,380,000	88,140,000	75,000,000

■ 공통 유의사항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분양가는 층별, 타입, 방향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견본주택 및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 홈페이지(<https://동탄꿈의숲자연앤데시앙.com>) 등에서 공급가격, 동·호배치도,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084.0000A 주택형은 84A, 84A1 주택 타입으로 혼합되어 있으며, 각 주택타입 및 동,호는 당첨자 선정시 무작위로 배정되고, 분양가는 타입별, 층별 등에 의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제세공과금(인지세,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미포함 금액입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용자금 안내> 해당 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 입주자는 주택도시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시 용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원 자격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하고,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주체가 부적격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임)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
- ※ 계약자는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익제기 및 그 밖의 인שה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 ※ 분양대금 납부계좌의 경우 각 세대별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부여할 예정이며, 세대별 가상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전 반드시 해당 세대의 가상계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가상계좌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계약금 계좌와 동일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가능)
-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가상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3671동 1502호 계약자 홍길동 → ‘36711502홍길동’ / 3683동 702호 계약자 홍길동 → ‘36830702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발코니
 확장공사

■
 발코니
 확장비
 안내

-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발코니 비확장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확장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 084.0000A 주택형은 84A, 84A1 주택타입으로 혼합되어 있으며, 각 주택타입 및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치되고, 84A와 84A1의 발코니확장 공사비가 상이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비용은 아파트 분양대금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세공과금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 또한 ‘마이너스옵션’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20%)	잔금(80%)
	계	계약 시	입주 시
74A	1,640,000	328,000	1,312,000
74B	2,061,000	412,000	1,649,000
84A	2,798,000	559,000	2,239,000
84A1	2,857,000	571,000	2,286,000
84B	2,398,000	479,000	1,919,000
84C	2,761,000	552,000	2,209,000
84D	2,607,000	521,000	2,086,000

- ※ 일부 타입의 경우 계약금 20% 중 일부 금액(천원단위 미만)이 잔금에 포함됩니다.
-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별·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주택형별·타입별 확장비가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견본주택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다용도실, 실외기실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 발코니확장 시 자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타입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등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납부금액	납부시기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계약금	공급금액의 20%	계약 시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잔금	공급금액의 80%	입주 시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의 경우 각 세대별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부여할 예정이며, 세대별 가상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전 반드시 해당 세대의 가상계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별 가상계좌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 납부계좌는 계약금 계좌와 동일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가능)
-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가상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된 발코니 확장 공사비(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분양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3671동 701호 계약자 홍길동 → ‘367107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유의사항

- ※ 발코니 확장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합니다.
-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건본주택 내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확장 공사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자료 및 건본주택,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 홈페이지(<https://동탄꿈의숲자연앤데시앙.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확장 공사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 발코니확장 공사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 주택형(타입)이라도 해당 동 ·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세탁기 설치 공간 및 수전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확장금액이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건본주택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사항은 '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공통

-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벽지 · 바닥재 · 주방용구 ·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1) 바닥재	바닥재(마루, 타일(욕실, 발코니), 현관바닥 마감재 등 일체), 굽틀,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등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2) 벽	해당부위 벽체마감일체(벽지, 타일, 인조석 및 벽패널류), 발코니벽도장	콘크리트면처리 또는 석고보드 마감
3)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장(해당부위), 발코니 천장도장	콘크리트 면처리 또는 천장틀 위 석고 보드 마감
4) 조명기구	전체 조명기구(부착형, 매입형) 및 각종 스위치 등	전기 배관/배선
5) 욕실	천장, 타일,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해당욕실)), 샤워부스(해당욕실), 욕실장, 욕실환풍기, 콘센트, 비데, 바닥배수커버, 욕실액세서리일체, 수전류, 젠다이,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부부욕실 스피커폰	액체 방수,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6) 주방	주방가구(상판 및 액세서리포함)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 마감, 수전류, 렌지후드, 기타 주방가전일체	소방관련 시설,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7) 문	문틀, 문선, 문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세대 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 발코니, 내부 PL창호
8) 가구류 및 기타	가구류일체(선반 포함), 수전류일체	-

-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 품목 등은 마감재 리스트 품목에 준합니다.(마감재 리스트는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타입	74A	74B	84A	84A1	84B	84C	84D
금액	31,836,000	32,040,000	35,781,000	35,761,000	35,832,000	36,198,000	36,182,000

-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세대별 공급금액(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아파트 공급금액

[단위 : 원, 세대]

주택형	주택 타입	층별	세대수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60%)						잔금 30% 입주시 (주택도시기금 제외금액)	
						1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2025.11.20.	2026.06.22.	2027.01.20.	2027.08.23.	2027.11.22	2028.02.21.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074.6365A	74A	1층	10	마이너스옵션	427,264,000	42,726,400	42,726,400	42,726,400	42,726,400	42,726,400	42,726,400	42,726,400	53,179,200	75,000,000
		2층	10	마이너스옵션	432,164,000	43,216,400	43,216,400	43,216,400	43,216,400	43,216,400	43,216,400	43,216,400	54,649,200	75,000,000
		3층	12	마이너스옵션	436,964,000	43,696,400	43,696,400	43,696,400	43,696,400	43,696,400	43,696,400	43,696,400	56,089,200	75,000,000
		4층	12	마이너스옵션	441,764,000	44,176,400	44,176,400	44,176,400	44,176,400	44,176,400	44,176,400	44,176,400	57,529,200	75,000,000
		5-9층	60	마이너스옵션	446,664,000	44,666,400	44,666,400	44,666,400	44,666,400	44,666,400	44,666,400	44,666,400	58,999,200	75,000,000
		10층이상	130	마이너스옵션	451,464,000	45,146,400	45,146,400	45,146,400	45,146,400	45,146,400	45,146,400	45,146,400	60,439,200	75,000,000
074.7733B	74B	1층	8	마이너스옵션	425,360,000	42,536,000	42,536,000	42,536,000	42,536,000	42,536,000	42,536,000	42,536,000	52,608,000	75,000,000
		2층	8	마이너스옵션	430,260,000	43,026,000	43,026,000	43,026,000	43,026,000	43,026,000	43,026,000	43,026,000	54,078,000	75,000,000
		3층	8	마이너스옵션	435,060,000	43,506,000	43,506,000	43,506,000	43,506,000	43,506,000	43,506,000	43,506,000	55,518,000	75,000,000
		4층	8	마이너스옵션	439,860,000	43,986,000	43,986,000	43,986,000	43,986,000	43,986,000	43,986,000	43,986,000	56,958,000	75,000,000
		5-9층	40	마이너스옵션	444,660,000	44,466,000	44,466,000	44,466,000	44,466,000	44,466,000	44,466,000	44,466,000	58,398,000	75,000,000
		10층이상	88	마이너스옵션	449,460,000	44,946,000	44,946,000	44,946,000	44,946,000	44,946,000	44,946,000	44,946,000	59,838,000	75,000,000
084.0000A	84A	1층	9	마이너스옵션	483,119,000	48,311,900	48,311,900	48,311,900	48,311,900	48,311,900	48,311,900	48,311,900	69,935,700	75,000,000
		2층	9	마이너스옵션	488,619,000	48,861,900	48,861,900	48,861,900	48,861,900	48,861,900	48,861,900	48,861,900	71,585,700	75,000,000
		3층	20	마이너스옵션	494,119,000	49,411,900	49,411,900	49,411,900	49,411,900	49,411,900	49,411,900	49,411,900	73,235,700	75,000,000
		4층	20	마이너스옵션	499,519,000	49,951,900	49,951,900	49,951,900	49,951,900	49,951,900	49,951,900	49,951,900	74,855,700	75,000,000
		5-9층	100	마이너스옵션	505,019,000	50,501,900	50,501,900	50,501,900	50,501,900	50,501,900	50,501,900	50,501,900	76,505,700	75,000,000
		10층이상	196	마이너스옵션	510,419,000	51,041,900	51,041,900	51,041,900	51,041,900	51,041,900	51,041,900	51,041,900	78,125,700	75,000,000
	84A1	1층	7	마이너스옵션	482,839,000	48,283,900	48,283,900	48,283,900	48,283,900	48,283,900	48,283,900	48,283,900	69,851,700	75,000,000
		2층	7	마이너스옵션	488,339,000	48,833,900	48,833,900	48,833,900	48,833,900	48,833,900	48,833,900	48,833,900	71,501,700	75,000,000
		3층	8	마이너스옵션	493,839,000	49,383,900	49,383,900	49,383,900	49,383,900	49,383,900	49,383,900	49,383,900	73,151,700	75,000,000
		4층	8	마이너스옵션	499,239,000	49,923,900	49,923,900	49,923,900	49,923,900	49,923,900	49,923,900	49,923,900	74,771,700	75,000,000
		5-9층	40	마이너스옵션	504,739,000	50,473,900	50,473,900	50,473,900	50,473,900	50,473,900	50,473,900	50,473,900	76,421,700	75,000,000
		10층이상	50	마이너스옵션	510,139,000	51,013,900	51,013,900	51,013,900	51,013,900	51,013,900	51,013,900	51,013,900	78,041,700	75,000,000
084.9530B	84B	1층	11	마이너스옵션	483,868,000	48,386,800	48,386,800	48,386,800	48,386,800	48,386,800	48,386,800	48,386,800	70,160,400	75,000,000
		2층	11	마이너스옵션	489,268,000	48,926,800	48,926,800	48,926,800	48,926,800	48,926,800	48,926,800	48,926,800	71,780,400	75,000,000
		3층	11	마이너스옵션	494,768,000	49,476,800	49,476,800	49,476,800	49,476,800	49,476,800	49,476,800	49,476,800	73,430,400	75,000,000
		4층	11	마이너스옵션	500,268,000	50,026,800	50,026,800	50,026,800	50,026,800	50,026,800	50,026,800	50,026,800	75,080,400	75,000,000
		5-9층	55	마이너스옵션	505,668,000	50,566,800	50,566,800	50,566,800	50,566,800	50,566,800	50,566,800	50,566,800	76,700,400	75,000,000
		10층이상	109	마이너스옵션	511,168,000	51,116,800	51,116,800	51,116,800	51,116,800	51,116,800	51,116,800	51,116,800	78,350,400	75,000,000
084.8448C	84C	1층	1	마이너스옵션	480,602,000	48,060,200	48,060,200	48,060,200	48,060,200	48,060,200	48,060,200	48,060,200	69,180,600	75,000,000
		2층	1	마이너스옵션	486,002,000	48,600,200	48,600,200	48,600,200	48,600,200	48,600,200	48,600,200	48,600,200	70,800,600	75,000,000
		3층	1	마이너스옵션	491,502,000	49,150,200	49,150,200	49,150,200	49,150,200	49,150,200	49,150,200	49,150,200	72,450,600	75,000,000

주택형	주택 타입	층별	세대수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60%)						잔금 30%	
						1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2025.11.20.	2026.06.22.	2027.01.20.	2027.08.23.	2027.11.22	2028.02.21.	입주시 (주택도시기금 제외금액)	주택도시기금
		4층	1	마이너스옵션	496,902,000	49,690,200	49,690,200	49,690,200	49,690,200	49,690,200	49,690,200	49,690,200	74,070,600	75,000,000
		5-9층	5	마이너스옵션	502,402,000	50,240,200	50,240,200	50,240,200	50,240,200	50,240,200	50,240,200	50,240,200	75,720,600	75,000,000
		10층이상	11	마이너스옵션	507,802,000	50,780,200	50,780,200	50,780,200	50,780,200	50,780,200	50,780,200	50,780,200	77,340,600	75,000,000
084.7828D	84D (1,4호)	1층	2	마이너스옵션	464,918,000	46,491,800	46,491,800	46,491,800	46,491,800	46,491,800	46,491,800	46,491,800	64,475,400	75,000,000
		2층	2	마이너스옵션	470,218,000	47,021,800	47,021,800	47,021,800	47,021,800	47,021,800	47,021,800	47,021,800	66,065,400	75,000,000
		3층	2	마이너스옵션	475,418,000	47,541,800	47,541,800	47,541,800	47,541,800	47,541,800	47,541,800	47,541,800	67,625,400	75,000,000
		4층	2	마이너스옵션	480,718,000	48,071,800	48,071,800	48,071,800	48,071,800	48,071,800	48,071,800	48,071,800	69,215,400	75,000,000
		5-9층	10	마이너스옵션	486,018,000	48,601,800	48,601,800	48,601,800	48,601,800	48,601,800	48,601,800	48,601,800	70,805,400	75,000,000
		10층이상	20	마이너스옵션	491,318,000	49,131,800	49,131,800	49,131,800	49,131,800	49,131,800	49,131,800	49,131,800	72,395,400	75,000,000
		1층	1	마이너스옵션	480,418,000	48,041,800	48,041,800	48,041,800	48,041,800	48,041,800	48,041,800	48,041,800	69,125,400	75,000,000
	84D (2,3호)	2층	1	마이너스옵션	485,818,000	48,581,800	48,581,800	48,581,800	48,581,800	48,581,800	48,581,800	48,581,800	70,745,400	75,000,000
		3층	2	마이너스옵션	491,318,000	49,131,800	49,131,800	49,131,800	49,131,800	49,131,800	49,131,800	49,131,800	72,395,400	75,000,000
		4층	2	마이너스옵션	496,718,000	49,671,800	49,671,800	49,671,800	49,671,800	49,671,800	49,671,800	49,671,800	74,015,400	75,000,000
		5-9층	10	마이너스옵션	502,118,000	50,211,800	50,211,800	50,211,800	50,211,800	50,211,800	50,211,800	50,211,800	75,635,400	75,000,000
		10층이상	20	마이너스옵션	507,618,000	50,761,800	50,761,800	50,761,800	50,761,800	50,761,800	50,761,800	50,761,800	77,285,400	75,000,000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74A	74B	84A	84A1	84B	84C	84D
금액	1,390,000	1,750,000	2,370,000	2,420,000	2,030,000	2,340,000	2,210,000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유의사항

-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경우 준공 후 키포출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에는 종료시점부터 세대 관리의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정전, 누전, 누수, 우수범람 등 피해 발생 시 해당세대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상기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항목” 과 골조 이외 항목은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으며, 채권양도가 불가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 마이너스옵션은 지정 계약기간에만 선택 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 및 변경이 일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 마이너스옵션은 자재수급 사정,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 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 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 작업 시 관리사무소 등에 사전 신고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이웃 세대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아파트 사업 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 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사업 주체에서 시공한 소방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해야하며,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렌지후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 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 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 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옵션 금액이 적용된 분양금액(분양대금에서 마이너스옵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마감 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 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입주 가능일(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 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6. 입주금 납부,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잔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된 납부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공고일 현재 연 7.5%, 향후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상기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사업주체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불출일)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 사항
- ※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 등)에 따른 금리인상,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중도금 대출 불가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시 지정한 중도금일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미진행에 따른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 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 계약자가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대출 등의 대출금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이자(보증수수료, 인지대 등)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인해 LTV에 주택도시기금이 포함됨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시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급되는 주택으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5.09.) 현재 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4.05.09.)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공급세대수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2024.11.09.)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20%를 공급 (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6개월이상 계속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단,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단독세대원 제외)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5.09.)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화성시)	30%	· 공고일 현재 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4.05.09. 이전부터 계속하여 화성시 거주 ('24.05.09.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경기도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4.11.09.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4.11.09. 전입한 경우 포함)
	③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되, 공급세대가 최소물량(3세대 미만)일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지역→경기도→기타지역 순으로 배정합니다.
- ※ 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종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해당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5.09.)	① 경기도	50%	·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24.05.09. 이전부터 계속하여 화성시 거주 ('24.05.09. 전입한 경우 포함) 단, 남은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
	②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각각 배정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해당 지역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6개월 미만)**·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경기도 거주자가 지역우선공급에서 낙점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때 지역우선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경기도에 우선 배정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 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개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해당 조항의 소명자료로 해당 건물이 속한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할 경우, 해당 서류에는 반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함’ 등의 문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 외(발급기관 자체 양식에 따른 해당 문구 미포함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하며, 소명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에는 불인정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공적 서류에 한하여 인정. 단순 연락두절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를 확인하고 자산보유기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전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른 출산특례를 적용받아 해당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격검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head><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head><tbody><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건 물</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r><td colspan="2">시설물</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body></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이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38,030천원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①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②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부동산(건물+토지)	237,050천원 이하	258,600천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참고
자동차	41,830천원 이하	45,630천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단,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출력한 단순 열람용 서류 인정불가 - 온라인 조회 시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별도 확인 필요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 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5년식 자동차를 2024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 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 소득기준 적용

-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 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전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단위 : 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생애 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신혼 부부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배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764,250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신생아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807,968	12,867,132	13,546,572	14,599,629	15,652,686	16,705,743
	배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764,250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각 특별공급 유형의 추첨공급(10%)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외별이)]에 해당하면 우선공급(70~90%) 및 일반공급(20%)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외별이)]로 신청가능합니다.

예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에 해당시 → 추첨공급(10%)이 아닌 일반공급(20%)으로 신청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02,03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단위 : 원]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6,484,781	7,720,279	8,127,943	8,759,777	9,391,612	10,023,446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7,925,843	9,435,897	9,934,153	10,706,395	11,478,636	12,250,87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10,807,968	12,867,132	13,546,572	14,599,629	15,652,686	16,705,74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11,528,499	13,724,941	14,449,677	15,572,938	16,696,198	17,819,45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12,249,030	14,582,750	15,352,782	16,546,246	17,739,711	18,933,17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15,131,155	18,013,985	18,965,201	20,439,481	21,913,760	23,388,04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15,851,686	18,871,794	19,868,306	21,412,789	22,957,273	24,501,756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기준
신혼부부·다자녀·신생아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단,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공적 서류에 한하여 인정. 단순 연락두절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다자녀·생애최초·신혼부부·노부모·신생아 특별공급	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개인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격검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계약이 불가하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접수 장소에 비치)” 작성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청약통장 재사용(일정기간 이후)이 가능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①국민건강보험공단 → ②근로복지공단 → ③국민연금공단 →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휴직자 본인의 정상근무기간 소득을 조회·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우수기능인, 우수선수,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담당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철거민), 경기남부보훈지청(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기도·서울시·인천광역시(장애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국방부 국군복지단(10년 이상 복무군인), 한국산업인력공단(우수기능인), 대한체육회(우수선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경기도 복지국(의사상자), 경기도 이민사회국(다문화가족), 통일부(납북피해자),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민국체육유공자)

※ 기관추천 배정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국가 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북한이탈 주민	철거민	중소기업 근로자	우수 기능인	우수 선수	의사상자	납북 피해자	다문화 가족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장애인			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74A	12	2	2	2	3	4	1	1	1	1	2	1	4	2	1	39
74B	8	1	2	1	2	3	0	0	0	0	1	0	2	1	1	22
84A	23	3	5	3	6	8	1	1	1	1	3	1	5	4	3	68
84B	12	1	2	1	2	4	1	1	1	1	1	0	3	1	1	32
84C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1
84D	3	1	1	0	1	1	0	0	0	0	2	1	1	1	0	12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본인이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5.05.19.)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층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급회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는 당첨자표일(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다자녀가구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추첨공급(10%)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외별이)]에 해당하면 우선공급(90%)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외별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예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에 해당시 → 추첨공급(10%)이 아닌 우선공급(90%)으로 신청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특례]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의 시·군·구가 속한 시·도(경기도) 거주자에게 50%(단,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남은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의 시·군·구가 속한 시·도(경기도) 거주자에게 50%(단,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남은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사람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층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공급신청자 본인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4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0명	0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해당없음	0	
무주택 기 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되,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없음	0	
해당 시·도 (수도권)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미거주	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해당없음	0	

(1), (2)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단,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무관)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하고 25세에 혼인)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3)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25세에 혼인 이후 소유하던 주택을 26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년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수도권)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노부모부양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 추첨공급(10%)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외별이)]에 해당하면 우선공급(90%)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외별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예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에 해당시 → 추첨공급(10%)이 아닌 우선공급(90%)으로 신청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수도권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특례**)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사람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층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공급신청자 본인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혼인 전에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포함)로 한정한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 (신청자의 태아 포함)]**가 있는 분**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생애최초 일반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생애최초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 추첨공급(10%)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외별이)]에 해당하면 일반공급(20%)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외별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예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에 해당시 → 추첨공급(10%)이 아닌 일반공급(20%)으로 신청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종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수도권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본 아파트는 공공분양주택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신청자의 태아 포함))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가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 후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 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공급신청자 본인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는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포함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이후에도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신혼부부 일반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신혼부부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 추첨공급(10%)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외별이)]에 해당하면 일반공급(20%)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외별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예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에 해당시 → 추첨공급(10%)이 아닌 일반공급(20%)으로 신청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가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해당없음	0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2명		2	
1명		1	
0명		0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화성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해당주택건설지역(화성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3년 초과 5년 이하	2	
		5년 초과 7년 이하	1	
		7년 초과	0	
바.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 3세 미만)	3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으로 봄)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2세 초과 4세 이하(만 5세 미만)	2	
		4세 초과 6세 이하(만 7세 미만)	1	
		해당없음	0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764,250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마. 혼인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공급신청자 본인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 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6. 신생아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9.) 현재 수도권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자녀 양육사실 증빙서류는 공적 서류 및 금융기관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신청결과 문자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신생아 일반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807,968	12,867,132	13,546,572	14,599,629	15,652,686	16,705,743
신생아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 추첨공급(10%)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외별이)]에 해당하면 일반공급(20%)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외별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예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에 해당시 → 추첨공급(10%)이 아닌 일반공급(20%)으로 신청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수도권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해당없음	0	
나. 미성년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화성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해당주택건설지역(화성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 원]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764,250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미성년 자녀의 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 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공급신청자 본인이 신생아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7.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주택공급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지역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 소유여부는 "표. 신청기준의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 32세 미혼(만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 한정)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물량을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화성시(1년 이상 계속 거주), 경기도(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수도권(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급회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는 당첨자표일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IV 신청 시 확인 사항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제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급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 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 특별공급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동·호 추천 및 계약체결 일정은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 홈페이지(<https://동탄꿈의숲자연앤데시앙.com>)를 통해 별도 통보 예정이며, 개별 안내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지위 유지기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 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천·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천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추천 및 계약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천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천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천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사업주체에 유선,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즉시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기타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6조의2를 준용합니다.

■ 특별공급

-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천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천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 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천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표. 신청기준’의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 공급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25.05.19.(월) 09:00 ~ 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모바일 : 스마트폰앱
일반 공급	• 1순위	‘25.05.20.(화) 09:00 ~ 17:30		
	• 2순위	‘25.05.21.(수) 09:00 ~ 17:30		

※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 1순위·2순위 기준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 ※ 모바일(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접속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①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방문접수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가 가능하고, ②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합니다.

■ **건본주택, 동탄 공의숲 자연& 데시앙 홈페이지(<http://동탄공의숲자연앤데시앙.com>)** 등으로 동·호배지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①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가능하고, ②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합니다.
- 건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신청 시 접수된 서류를 계약 시 구비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 시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건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보유기준 등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조회 등에 따른 검색 결과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특별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체는 자격확인 제출서류 외에도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급유형(기관추천·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에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순위확인서 발급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 | | |
|----------------------------------|---|---|
|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청약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5.29.(목) ~ 2025.06.07.(토) (10일간) |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5.29.(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안내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상기 은행창구 청약 시 구비서류는 참고사항이며, 은행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신청 전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은행 상황에 따라 은행 지점별 운영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VII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 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 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 추후 홈페이지 별도 안내)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자격서류 제출 (정당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정당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
2025.05.29.(목) 청약Home 및 모바일앱 (www.applyhome.co.kr)	2025.06.01.(일)~06.09.(월) / 9일간 (10:00~17:00)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 건본주택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47-5) ※ 사전방문 예약제 운영 -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 홈페이지(https://동탄꿈의숲자연앤데시앙.com)	2025.07.19.(토)~07.27(일) / 9일간(10:00~17:00)	추후 일정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 홈페이지 고지 (https://동탄꿈의숲자연앤데시앙.com)

- ※ 특별공급(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표의 일정이 변동될 시에는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 홈페이지(<https://동탄꿈의숲자연앤데시앙.com>)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은 상기 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제출 기간이 상이하므로 추후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 홈페이지(<https://동탄꿈의숲자연앤데시앙.com>)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서류접수기간 내 서류제출 후 자격검증을 완료한 당첨자에 한함)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세대별 가상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추첨 및 계약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당첨자(예비당첨자의 경우 해당기간 별도 안내)는 상기 해당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추첨 및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호추첨 일정에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소명기간 내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사업주체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즉시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에도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하여야 하므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접수기간 상이)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9.)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 또는 스캔본으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같은 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소명기간 내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소득·자산 등 자격 조회 불가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계약 체결 전 ‘서류접수기간’ 내에 제출)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를 표시하여 발급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		서약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원	※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하여 서류접수기간 내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분증	본인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인정
	○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일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본인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 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출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또는 출산특례 미적용 시에도 세대원 자격 확인 위하여 필수 제출
		○		(예비)배우자 또는 세대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 동일) 모두 제출
-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 복무기간 명시)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 소득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이 만 18세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소득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 또는 출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출산특례 적용 대상자 포함)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4.06.19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출산특례 관련]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하여 발급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출산특례 관련] 출산특례를 적용받아 해당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한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예비)배우자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이 해당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인터넷 청약신청한 경우 생략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 전체 포함 '으로 발급)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 상세 '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분으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 상세 '로 발급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입양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세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전부),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이력 포함) 등 " 전체포함 "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 제출(주민등록표등본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 상세 '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 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자는 1961.1.1.로 지정)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일로 설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 상세 '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 상세 '로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 상세 '로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주체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예비신혼부부 서약서	본인 및 예비배우자	• 접수장소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비)배우자 또는 세대원	• 배우자의 세대원이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예비배우자의 등본 상 세대원이 등재된 경우 관계 확인 위한 필수 제출(등본 상 관계 인정 불가)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 상세 '로 발급
	○			자녀	• 1순위자로서 자녀를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른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 상세 '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9> 참고)	본인	•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9>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당첨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 전체 포함 ’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 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약속(접수장소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임신진단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또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약속(접수장소에 비치)
		○	출생증명서	본인	• 2세 미만 자녀를 둔 사실을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2세 미만 자녀가 입양아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 세대주 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로서 견본주택에서 현장접수하는 경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상기 구비사항 외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표9>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사본 불인정)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포함)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납부내역증명 발급 시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연도에 해당하는 서류 발급 (소득금액증명 5개년도 발급연도와 일치해야 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②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납부내역증명 발급 시 5개년도 소득세 납부년도에 해당하는 서류 발급 (소득금액증명 5개년도 발급연도와 일치해야 함)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①, ②, ③ 해당직장/세무서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 또는 스캔본으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계약 체결 전 ‘서류접수기간’ 내에 제출)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를 표시하여 발급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서약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인정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일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 전체포함 ”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 이력 포함) 등 “ 전체포함 ”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 상세 ’로 발급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신생아 우선공급 미적용 시에도 세대원 자격 확인 위하여 필수 제출
		○		배우자 또는 세대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 상세 ’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 상세 ’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 동일) 모두 제출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 복무기간 명시)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신생아 우선공급]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 [신생아 우선공급] 2세 미만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신생아 우선공급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제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배우자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이 해당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 세대주 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구비사항 외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재직증명서 등),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②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상기 단신부임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당첨유형별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당첨자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요구하는 서류까지 모두 제출한 것을 말함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날인 필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3자 대리계약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인정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 도장과 일치해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으로 대체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사본)	본인	• 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전자수입인지 구매 -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우편물 취급소 불가), 은행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 시 사본 첨부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추가 적격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기재출한 경우 제외)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일체	본인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일체
	○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분양사무실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상기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은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제출한 당첨자(예비입주자)만 제출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며, 분양 계약체결 후 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수분양자가 먼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한 뒤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인지세 분담액(인지세의 1/2)을 분양계약자의 아파트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 된 실제거래가격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 및 인지세 분담액(인지세의 1/2)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안내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관련 제반사항(선택·계약·설치 등)은 민간사업자(태영건설 외 2개사) 책임으로 진행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계약자 대상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체결일정 추후 안내)

※ **084.0000A 주택형은 84A, 84A1 주택타입으로 혼합되어 있으며, 각 주택타입 및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고, 타입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금액 및 84A와 84A1의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이며 계약일정 및 내용, 납부일정 및 계좌, 제품상세내용 등은 추후 별도로 분양계약자에게 공지 후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판매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로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비용은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용도에 맞게 선택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모집공고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의해 형태, 재질, 사양, 색상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견본주택 또는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 홈페이지(<https://동탄꿈의숲자연앤데시앙.com>)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은 입주시기에 따른 최신모델 변경 요청이 불가하며,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단종,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 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일회사의 동종,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 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결정기간 이후 선택품목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합니다.
-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선)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은 선택 불가합니다.
- ※ 옵션표 상 각 실의 명칭은 설계변경 등으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에 따른 마감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구의 형태, 크기, 칸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1) 시스템 에어컨(삼성전자)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74A/B	선택1	거실+침실1	2대	3,610,000
	선택2	거실+침실1+침실 2,3	4대	6,350,000
84A,A1 (알파룸)	선택1	거실+침실1	2대	3,740,000
	선택2	거실+침실1+침실 2,3	4대	6,360,000
	선택3	거실+침실1+침실 2,3+알파룸	5대	7,220,000
84A,A1 (디럭스주방)	선택1	거실+침실1+주방	3대	5,080,000
	선택2	거실+침실1+침실 2,3+주방	5대	7,430,000
84B,C,D	선택1	거실+침실1	2대	3,560,000
	선택2	거실+침실1+침실 2,3	4대	6,420,000

- 시스템 에어컨 추가선택품목(유상)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시 해당 선택에 따른 거실/침실1,2,3의 냉매배관 및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시공시 설치되는 제품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회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각실 설치되어 있는 방의 냉방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으로 가변형 벽체를 확장할 경우에는 실면적이 증가하여 에어컨 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추가선택품목(유상) 설치함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냉매배관(거실/침실1,2,3)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해당 선택에 따라 제외하며,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설비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납부될 예정이며 이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납부방법은 계약금,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 비용 등 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상기 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며,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회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 선택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침실1,2,3(벽걸이형) 기본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월패드 및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무선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단,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별도로 설치된 에어컨의 경우 월패드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2) 기타 추가 선택품목(유상)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공급금액	비고
74A	현관	중문	미설치	원슬라이딩 자동중문		2,390,000	
	주방	주방 강화	상판(인조대리석) 벽(타일)	상판/벽 엔지니어드 스톤		2,300,000	
		주방 특화	상판(인조대리석) 벽(타일)+일반아일랜드장 +기본 일반후드+ 기본 싱크수전+ 주방 TV(10인치)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 스톤+식탁일체형 아일랜드장+독립형후드+고급 싱크수전+ 주방 TV(13인치)+아일랜드 매립형 콘센트		5,080,000	
		비스포크	일반 냉장고장	삼성 비스포크 3종 SET (냉장+냉동+김치) +비스포크 냉장고장 변경 (* RR40A7995/7895AP+RZ34A7965/7865AP+RQ34A7945/7845AP)		4,880,000	
		인덕션	3구 가스 쿡탑 (하츠 SSGC 3605SABH)	1안	3구 인덕션 (하츠 IH-3601TTL)	550,000	일반형
				2안	3구 인덕션 (하츠 IH-3608FTL)	730,000	고급형
		식기세척기	기본 수납장	1안	식기세척기 (삼성 DW80F71Y1SEW)	910,000	일반형
				2안	식기세척기 (삼성 DW80F75K1UAP)	1,700,000	고급형
		오븐	기본 수납장	1안	스마트 전기오븐 (삼성 NQ36A6555CK)	350,000	일반형
				2안	스마트 전기오븐 (삼성 NQ50T8539BK)	830,000	고급형
	침실1	드레스룸	화장대+드레스룸도어 +포스트타입시스템선반	AL슬라이딩 도어+벽패널형시스템가구 (화장대,조명 포함)+천장형 제습기(힘펠 DHV-5PCCU)		5,420,000	
				천장형 제습기(힘펠 DHV-5PCCU)		1,010,000	
	침실2,3		침실3 불박이장(1개소)	매립형불박이장(폴딩도어)		1,910,000	

구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공급금액	비고
74B	현관	중문	미설치	원슬라이딩 자동중문		2,390,000	
	주방	주방 강화	상판(인조대리석) 벽(타일)	상판/벽 엔지니어드 스톤		3,230,000	
		주방 특화	상판(인조대리석) 벽(타일)+일반아일랜드장 +기본 일반후드+ 기본 싱크수전+ 주방 TV(10인치)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 스톤+식탁일체형 아일랜드장+독립형후드+고급 싱크수전+ 주방 TV(13인치)+아일랜드 매립형 콘센트		6,010,000	
		비스포크	일반 냉장고장	삼성 비스포크 3종 SET (냉장+냉동+김치) +비스포크 냉장고장 변경 (* RR40A7995/7895AP+RZ34A7965/7865AP+RQ34A7945/7845AP)		4,970,000	
		인덕션	3구 가스 쿡탑 (하츠 SSGC 3605SABH)	1안	3구 인덕션 (하츠 IH-3601TTL)	550,000	일반형
				2안	3구 인덕션 (하츠 IH-3608FTL)	730,000	고급형
		식기세척기	기본 수납장	1안	식기세척기 (삼성 DW80F71Y1SEW)	910,000	일반형
				2안	식기세척기 (삼성 DW80F75K1UAP)	1,700,000	고급형
		오븐	기본 수납장	1안	스마트 전기오븐 (삼성 NQ36A6555CK)	350,000	일반형
				2안	스마트 전기오븐 (삼성 NQ50T8539BK)	830,000	고급형
	침실1	드레스룸	화장대+드레스룸도어 +포스트타입시스템선반	AL슬라이딩 도어+벽패널형시스템가구 (화장대,조명 포함)+천장형 제습기(힘펠 DHV-5PCCU)		4,160,000	
		침실2,3	침실3 불박이장(1개소)	매립형불박이장(폴딩도어)		1,910,000	

구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공급금액	비고
84A / 84A1	현관	중문	미설치	원슬라이딩 자동중문		2,390,000	
	주방	주방 강화	상판(인조대리석) 벽(타일)	상판/벽 엔지니어드 스톤		2,100,000	
		주방 특화	상판(인조대리석) 벽(타일)+일반아일랜드장 +기본 일반후드+ 기본 싱크수전+ 주방 TV(10인치)	1안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 스톤+ 독립형후드+고급 싱크수전 +주방 TV(13인치)+아일랜드 매립형 콘센트	4,930,000	일반주방 (알파룸선택)
				2안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 스톤+알파룸 연계 대면형 주방 +독립형 아일랜드장+주방장식장+주방 팬트리(선반장 포함)+독립형후드+고급 싱크수전+ 주방 TV(13인치) +아일랜드 매립형 콘센트	10,200,000	디럭스주방
		비스포크	일반 냉장고장	삼성 비스포크 3종 SET (냉장+냉동+김치) +비스포크 냉장고장 변경 (* RR40A7995/7895AP+RZ34A7965/7865AP+RQ34A7945/7845AP)		4,890,000	
		인덕션	3구 가스 쿡탑 (하츠 SSGC 3605SABH)	1안	3구 인덕션 (하츠 IH-3601TTL)	550,000	일반형
				2안	3구 인덕션 (하츠 IH-3608FTL)	730,000	고급형
		식기세척기	기본 수납장	1안	식기세척기 (삼성 DW80F71Y1SEW)	910,000	일반형
				2안	식기세척기 (삼성 DW80F75K1UAP)	1,700,000	고급형
		오븐	기본 수납장	1안	스마트 전기오븐 (삼성 NQ36A6555CK)	350,000	일반형
				2안	스마트 전기오븐 (삼성 NQ50T8539BK)	830,000	고급형
	침실1	드레스룸	화장대+드레스룸도어 +포스트타입시스템선반	AL슬라이딩 도어+벽패널형시스템가구 (화장대,조명 포함)+천장형 제습기(힘펠 DHV-5PCCU)		4,960,000	
		침실2,3	침실3 불박이장(1개소)	매립형불박이장(폴딩도어)		1,910,000	

구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공급금액	비고
84B	현관	중문	미설치	원슬라이딩 자동중문		2,390,000	
	주방	주방 강화	상판(인조대리석) 벽(타일)	상판/벽 엔지니어드 스톤		2,640,000	
		주방 특화	상판(인조대리석) 벽(타일)+일반아일랜드장 +기본 일반후드+ 기본 싱크수전+ 주방 TV(10인치)	주방 상판/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독립형후드+고급 싱크수전 +주방 TV(13인치)+아일랜드 매립형 콘센트		4,650,000	
		비스포크	일반 냉장고장	삼성 비스포크 3종 SET (냉장+냉동+김치) +비스포크 냉장고장 변경 (* RR40A7995/7895AP+RZ34A7965/7865AP+RQ34A7945/7845AP)		5,100,000	
		인덕션	3구 가스 쿡탑 (하츠 SSGC 3605SABH)	1안	3구 인덕션 (하츠 IH-3601TTL)	550,000	일반형
				2안	3구 인덕션 (하츠 IH-3608FTL)	730,000	고급형
		식기세척기	기본 수납장	1안	식기세척기 (삼성 DW80F71Y1SEW)	910,000	일반형
				2안	식기세척기 (삼성 DW80F75K1UAP)	1,700,000	고급형
		오븐	기본 수납장	1안	스마트 전기오븐 (삼성 NQ36A6555CK)	350,000	일반형
				2안	스마트 전기오븐 (삼성 NQ50T8539BK)	830,000	고급형
	침실1	드레스룸	화장대+드레스룸도어 +포스트타입시스템선반	AL슬라이딩 도어+벽패널형시스템가구 (화장대,조명 포함)+천장형 제습기(힘펠 DHV-5PCCU)		4,650,000	
		침실2,3	침실3 불박이장(1개소)	매립형불박이장(폴딩도어)		1,910,000	

구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공급금액	비고
84C	현관	중문	미설치	원슬라이딩 자동중문		2,390,000	
	주방	주방 강화	상판(인조대리석) 벽(타일)	상판/벽 엔지니어드 스톤		4,410,000	
		주방 특화	상판(인조대리석) 벽(타일)+일반아일랜드장 +기본 일반후드+ 기본 싱크수전+ 주방 TV(10인치)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 스톤+식탁일체형 아일랜드장+독립형후드+고급 싱크수전+ 주방 TV(13인치)+아일랜드 매립형 콘센트		7,180,000	
		비스포크	일반 냉장고고장	삼성 비스포크 3종 SET (냉장+냉동+김치) +비스포크 냉장고고장 변경 (* RR40A7995/7895AP+RZ34A7965/7865AP+RQ34A7945/7845AP)		4,970,000	
		인덕션	3구 가스 쿡탑 (하츠 SSGC 3605SABH)	1안	3구 인덕션 (하츠 IH-3601TTL)	550,000	일반형
				2안	3구 인덕션 (하츠 IH-3608FTL)	730,000	고급형
		식기세척기	기본 수납장	1안	식기세척기 (삼성 DW80F71Y1SEW)	910,000	일반형
				2안	식기세척기 (삼성 DW80F75K1UAP)	1,700,000	고급형
		오븐	기본 수납장	1안	스마트 전기오븐 (삼성 NQ36A6555CK)	350,000	일반형
				2안	스마트 전기오븐 (삼성 NQ50T8539BK)	830,000	고급형
	침실1	드레스룸	화장대+드레스룸도어 +포스트타입시스템선반	AL슬라이딩 도어+벽패널형시스템가구 (화장대,조명 포함)+천장형 제습기(힘펠 DHV-5PCCU)		4,880,000	
				천장형 제습기(힘펠 DHV-5PCCU)		1,010,000	
	침실2,3			침실3 불박이장(1개소)	매립형불박이장(폴딩도어)		1,910,000

구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공급금액	비고	
84D	현관	중문	미설치	원슬라이딩 자동중문		2,390,000		
	주방	주방 강화	상판(인조대리석) 벽(타일)	상판/벽 엔지니어드 스톤		3,930,000		
		주방 특화	상판(인조대리석) 벽(타일)+일반아일랜드장 +기본 일반후드+ 기본 싱크수전+ 주방 TV(10인치)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 스톤+식탁일체형 아일랜드장+독립형후드+고급 싱크수전+ 주방 TV(13인치)+아일랜드 매립형 콘센트		6,710,000		
		비스포크	일반 냉장고고장	삼성 비스포크 3종 SET (냉장+냉동+김치) +비스포크 냉장고고장 변경 (* RR40A7995/7895AP+RZ34A7965/7865AP+RQ34A7945/7845AP)		4,970,000		
		인덕션	3구 가스 쿡탑 (하츠 SSGC 3605SABH)	1안	3구 인덕션 (하츠 IH-3601TTL)	550,000	일반형	
				2안	3구 인덕션 (하츠 IH-3608FTL)	730,000	고급형	
		식기세척기	기본 수납장	1안	식기세척기 (삼성 DW80F71Y1SEW)	910,000	일반형	
				2안	식기세척기 (삼성 DW80F75K1UAP)	1,700,000	고급형	
		오븐	기본 수납장	1안	스마트 전기오븐 (삼성 NQ36A6555CK)	350,000	일반형	
				2안	스마트 전기오븐 (삼성 NQ50T8539BK)	830,000	고급형	
	침실1	드레스룸	화장대+드레스룸도어 +포스트타입시스템선반	AL슬라이딩 도어+벽패널형시스템가구 (화장대,조명 포함)+천장형 제습기(힘펠 DHV-5PCCU)		4,870,000		
				천장형 제습기(힘펠 DHV-5PCCU)		1,010,000		
	침실2,3			침실3 불박이장(1개소)		매립형불박이장(폴딩도어)		1,910,000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며,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의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판매가는 아파트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로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 이상(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미선택 시 주방 벽체는 타일로 시공되며, 주방 상판은 인조대리석이 기본 시공되고,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판매가는 해당세대의 기본제공 주방 벽체(타일) 설치 및 인조대리석 상판 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은 구조상의 문제로 일부 및 전체 품목 선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일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은 특정 품목을 선택해야만 추가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의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의 위치 및 선택항목은 당사 분양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에 대해서 계약자는 시공사에 민원 제기 및 하자보수 책임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84A/84A1타입 디럭스주방의 경우 주방장식장과 톨장의 도어 개폐시 일부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A/84A1타입 유상옵선 선택 유,무에 따라서 현관창고장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84A/84A1타입 디럭스주방 선택시 가스배관 미설치로 인해 유상옵선(인덕션)을 추가 선택하여야 합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유상옵선 선택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납부금액	납부시기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계약금	20%	계약 시	1006-201-573898	우리은행	(주)태영건설
잔금	80%	입주 시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관련 대금은 반드시 상기 계좌로 입금 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이후 상기 유상옵션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 한 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공급대금(계약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 ‘101101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견본주택 및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입주자는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로 형성된 입주자 모임을 통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 및 그 관계자에게 공급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요청이나 민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부적격 의심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자로 관리합니다.
 -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 소득·자산보유기준 등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 등 제외)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사업주체가 부적격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접수장소에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 선정을 제한합니다.
-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4.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예정 시기 · 부대복리시설 관련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 : **2028년 06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은 최소 60일 이상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오염토,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 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 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 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관리비에치금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비에치금을 부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근로자휴게실,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실내체육관, 티하우스, 맘스테이션,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에듀센터(작은도서관, 방과후교실, 독서실, 자원봉사실, 맘스카페, 실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다목적실(주민자치실), 공유세탁실, 여성공동작업실) 등

5.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아래의 서류 제출 및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 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지체·뇌병변 장애인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센서등	지체·뇌병변 장애인
욕실	단자 없애기,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 조정, 높낮이 조절 세면기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주방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 조정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신청시기 : 최초 공급계약 체결기간(2025.07.19. ~ 2025.07.27.)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필요서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6. 지구 및 단지 여건

※ 다음과 같은 설계 관련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내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82호(2022.06.30.)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8차), 개발계획(20차) 및 실시계획(20차) 변경”, “제2022-564호(2022.10.07.)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21차)”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승인조건 이행, 지자체 의견, 민원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당해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화성동탄(2)지구의 토지이용계획도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건본주택(홈페이지), 광고 홍보인쇄물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VR, CG,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청약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접수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서측으로 국지도23호선(용구대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지역은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지구 내에는 위험물 처리시설(주유소 등), 공급처리시설(케이블헤드 등) 등의 공공시설이 존치 또는 설치 예정입니다.
- 단지 북측으로 전기공급시설(직선거리 약 1.8km)과 단지 남서측으로 전기공급시설(직선거리 약 1.4km)이 위치하고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남서측으로 유통업무설비(직선거리 약 900m), 단지 남측으로(직선거리 약 900m) 복합물류센터 및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주유소 등)이 위치하고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지구 내에는 기존 공장(연구소, 물류시설 등) 및 기타시설(주유소, 법왕청)이 존치 예정입니다.
- 단지 남측으로 화성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산과의 거리나 레벨차로 인해 인접 세대 및 저층 세대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 바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세대는 시설물(야간조명, 운동시설 등) 및 해당 시설 이용객 등으로 인한 소음 발생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북서측으로 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세대는 시설물(야간조명, 운동시설 등) 및 해당 시설 이용객 등으로 인한 소음 발생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남동측으로 골프장(직선거리 약 40m)이 위치하고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서측에 용구대로변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소음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 동탄일반산업단지(직선거리 약 2km)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 산업단지 내 수질복원센터, 집단에너지시설(지역난방공사) 등 공공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 당해지구 동탄JC측에 화성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직선거리 약 1.9km, 송동 681-246, 일일 160톤 처리 규모의 음식물 건식 사료화 및 일일 157톤 규모의 음식물 혐기성소화설비)을 설치·운영중에 있으니 이에 대하여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주변 단지 및 화성동탄2택지개발지구(신주거문화타운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내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주유소,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공동주택 및 시설물 건축(계획) 등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신호등, 교차로, 버스정류장, CCTV 등)에 대하여 시설물 위치 이전 및 추가 설치 등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으로 기타 유해시설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지구 내에는 민간분양·공공분양·행복주택·국민임대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동측 연결녹지에 산책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저층 및 인접 세대는 소음 발생 및 사생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20m도로에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계획되어 있고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이용 시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과 북서측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접하여 있어 인근의 세대는 소음 발생 및 사생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관련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출차주의 경보음 포함),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환경권(일조, 조망, 소음, 분진, 냄새, 진동, 묘지, 고압선 등 환경권 사유 일체) 제한 및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와 면한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 당 사업지는 택지개발된 대지에 계획된 공동주택으로 주변 레벨 현황에 맞춰 계획되어 단지내 단차가 다소 발생하였으며 진입통로가 계단으로 계획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 사전에 단지 현황을 참고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 바랍니다.

■ 입주 관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 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반경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사이버 견본주택,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인 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잔금 완납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 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교육 관련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유입되는 초등학교생은 세정초등학교에, 중학생은 세정중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며, 고등학생은 화성시 관내 기존 고등학교 및 개교 예정인 고등학교에 배치 가능합니다.(단,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학생 배치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 계획에 따름)
- 당해지구 내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결과 및 학생배치계획,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사업 추진 현황 변동(취소, 해제 등) 세대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정책 추진 등에 따라 학생 배치계획 등은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배치 계획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해당 기관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대상이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경우이거나 초등돌봄 수요가 없는 등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이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국공립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련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영구저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부력방지 공법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각 동 출입구 등 게시판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부대복지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전기실·발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스카이어커뮤니티가 설치되는 3683동의 최상층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규모, 마감, 평면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카이어커뮤니티가 설치되는 3683동의 저층 세대와 인접동의 저층세대는 3683동 1층에 스카이라운지 로비를 이용하는 입주민들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683동 스카이라운지용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당첨자는 청약 및 계약 전 본 입주자모집공고 및 사이버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단지 내부여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웬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차로 및 비상차로 구간은 비상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주차구획선이 있으며 이곳에 입주민은 주차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중앙광장, 티하우스, 어린이 놀이터, 필로티, 주출입구 문주, 설비환기구(DA), 발전기실 및 환기구(DA), 전기실, 쓰레기 분리 보관소, 외부계단, 엘리베이터(주동 및 외부),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 주민공동시설용 실외기, 조경등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빗공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는 도로의 높이 차이 및 단차가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내, 외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심의를 거쳐 설치되므로,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로 진입하는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은 공급계약 체결 전 설계관련 도서 등을 통하여 해당 진입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익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상 자전거 보관소 등은 설치 위치 및 개소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조, 통풍, 채광, 조망은 동별, 층별,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는 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용 급/배기구와 같은 설비 환기구가 일부 1층 세대와 인접 또는 연접되어 있으며 인근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비실, 단지 내 구조물,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조망 등과 같은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자는 간판 설치 시 관리단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설치하여야 하고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는 관계부서(화성시 고시(제2019-233, 2019.10.30.) 준수)의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의 주출입구에는 아파트차량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가감속차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당 아파트의 대지면적에는 화성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도로면적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문의 높이는 인테리어 계획의 사유로 사업승인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 · 환기창의 설치위치는 호 · 라인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계단실 창에는 망입유리가 적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이 동 전후 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 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심의 및 협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보안등 및 야간조명, 문주,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면특화를 위하여 3680동, 3681동, 3682동, 3683동의 일부 면에 유리마감재(커튼월룩)이 설치되고 3676동, 3677동, 3679동, 3680동, 3681동, 3682동의 일부 면에BAP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치위치 및 면적은 동별로 상이하고 위치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설치위치에 따라 마주보는 일부 세대 또는 인접 세대의 경우 빛반사 등에 따른 눈부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주동 외부에 적용된 커튼월 룩 입면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 범위, 고정 방식, 유리모듈, 색상, 디자인 등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차장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 및 이용(전기 자동차와 주차금지 등)의 형평성이 맞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도선이 설치되며, 일부 동 및 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축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에 의해 일부 저층세대에는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저수조 및 기계실은 현장여건에 의한 경미한 사업승인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이동하여 설치 할 수 없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를 통하여 단지내 진입하는 통학차량의 경우 진입 후 회전차로(교통섬)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구조 방식은 아파트주동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하주차장 :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 동, 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이버 견본주택 내 VR모형도 등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출차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해당시설에 필요한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 주민공동시설 등) 및 수경공간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상가)이 연결이 안되어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671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해당 동 세대는 소음 및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정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정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현관/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공청 및 위성안테나, 웨더스테이션용 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넬, 이동통신 설비등의 시설물, 경관조명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설비는 **3671동, 3672동, 3673동, 3674동, 3675동, 3676동, 3677동, 3678동, 3679동, 3680동, 3681동, 3682동**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수량, 위치,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창문에서 태양광 집광판 및 관련 설비가 보일 수 있으며 경관 침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기는 공용부 전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태양광 시설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민에 의해서 유지 및 관리되며, 일체의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 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책사유가 없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 **3672동 옥상층**/이동통신설비(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 옥상층(**3672동, 3674동, 3677동, 3679동, 3681동, 3682동**), 지하 2층(지하주차장내 헬룸 2개소), 지하 3층(지하주차장내 헬룸 4개소)]
- 옥상에 설치되는 이동통신설비 장비는 본 공사 시 동호수 변경에 따른 변경과 수량, 위치, 규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최상층 엘리베이터홀)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카 이동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필로티 하부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규모,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구조에 따라 필로티 하부 자전거보관소 수량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동지하,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벽체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각 실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창호크기, 위치, 재질, 외부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상,하차 시 차량 및 신호수의 육성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외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구간 및 깊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홈페이지) 내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정,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정, 수경시설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정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정공간에 D/A(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차에 의해 각 동별 출입구 레벨이 상이함을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 진입 높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만족하며 유효 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이상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상 일부세대는 아샛집 사다리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고층세대의 경우 아샛집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상도로와 거리가 떨어진 일부세대의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일부 지상부 주차장 계획 및 주차램프 위치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야간 빛공해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분양 카달로그나 사이버 견본주택, 설계관련 도서 등을 통해 인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모든 주차장은 지하에 위치합니다.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장은 지상에 위치하며, 총 장애인 주차 1대, 일반형 주차 2대가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외벽 마감은 석재마감(지상3층 이하)과 테라코타(3671동, 3672동, 3673동에 층수 및 위치 상이함), 수성페인트 도로로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출입구는 각 동호별로 천장 높이 마감재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도상의 필로티는 동별 라인마다 위치와 높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킹서비스 운영 및 하수도 사용료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특성상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분산 배치되어 실외기실이 주동출입구 및 보행자 통로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 내부 및 주동 출입구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3672동, 3673동 3679동 지하층 주변에는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열교환실 등이 설치되어 냄새 및 미세한 진동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3671동, 3672동, 3682동, 3683동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데크구간과 인접하여 차량의 입출차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장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팬룸 및 기계실/전기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구획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며, 관련 민원을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 48조 및 48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등급 공개합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본 건축물의 수정 메르칼리 진도(MMI)등급은 VII이며 최대지반가속도는 0.211g입니다. (VII - 0.221g) 산정된 가속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3672, 3673, 3674, 3675, 3676동은 동측 연결녹지 산책로와 인접해 있어 소음등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683동 옥상부에 스카이라운지 및 게스트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어 스카이라운지 및 게스트하우스 이용시 하부 세대는 방문객 입실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3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모든 동에서 연결이 되지 않는 스킵 형태로 계획되어 있음을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3671동, 3680동, 3681동, 3682동, 3683동 지하주차장은 1개층에 연결되어 있어 주차면이 협소 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놀이터 주변에 위치한 동들은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페, 중앙광장, 부대시설 등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동은 소음, 사생활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전 확인 바랍니다.
- 스카이라운지 및 게스트 하우스는 3683동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3683동 최상층(19층 1~4호 세대),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최상층은 소음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683동은 상부에 스카이라운지 및 게스트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어 별도의 E/V가 있으며, 주동 E/V는 스카이라운지로 직접 접근이 불가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유아놀이터가 3671동 동측, 3672동 서측으로 1개소가 위치하므로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가 3672동과 3673동 인근에 1개소, 3674동, 3676동, 3677동, 3678동 인근에 1개소, 3679동, 3680동, 3681동 인근에 1개소가 위치하므로 인근동에 있는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중앙에 중앙광장과 티하우스가 설치되므로 인접동에 있는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차가 나는 데크 구간에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통행 동선에 주민공동시설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동은 해당 시설 냉난방용 실외기 설치로 인해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분산 배치되어 실외기실이 주동출입구 및 보행자 통로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자동심장제세동기 등의 응급장치를 동당 1개소(매립형, 총 18개소), 경로당 1개소(스탠드형), 커뮤니티시설 1개소(스탠드형) 설치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의 공유창고는 입주 후 CS관리를 위해 약 2년동안 CS사무실로 사용되며 그 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이관하여 아파트 시설로 사용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빗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장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영비 및 유지비용은 공용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에 의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제외)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인접 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 부위에는 직접 외기에 면해 결로에 취약하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샷시 설치기준은 사이버 견본주택 또는 설계관련 도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실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목창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사이버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골조와 이질 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상의 이유로 사이버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 및 빌트인가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 바닥에는 별도 마감재(강마루)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사이버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실외기실 및 발코니에 가스배관,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평면이라도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적용부위 내용은 평형 타입별 평면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이버 견본주택 및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열성능 및 창호 기밀성능 강화와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시켜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전기분전함 및 통신단자함, 급수급탕 계량기, 월패드, 각종 스위치 등의 설치로 해당부위의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와 선반구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직접외기에 면해 결로에 취약하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확장 부위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제1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입주자의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허 및 의장등록 또는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선풍통 및 드레인의 위치 및 방향 등이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사업주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세대 내 설치 되는 세대분전함(전기/통신) 및 전기 관련 기기등의 위치, 타입, 수량은 인허가 및 관계기관 검토, 시공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일랜드장(해당 주택형)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이 노출되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우수 선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일반사항

- 이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환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사이버 견본주택에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상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위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 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문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 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 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파의 우려가 있는 저층, 고층 일부 세대용 수도 계량기의 동파 방지용 열선 전원은 세대가 아닌 공용 전기요금으로 부과합니다.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위세대 실별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특성상 위치, 크기, 동선 등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사이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 공용면적(계단실 코어)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 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방식 차이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동 배치 특성에 따라 대부분 동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시공됩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 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 단열 및 마감재, 샷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신속한 하자상담 및 처리 등 CS업무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창고 또는 다목적실 공간을 통합 CS센터로 2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하자처리를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동PIT 일부 공간에 관련 자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사이버 견본주택 또는 기타 홍보물 상에 표기된 이미지와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식재되는 나무의 종류 및 배치는 사이버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놀이시설물을 포함한 단지 내 시설물의 디자인과 배치는 사이버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인접 건물에 의해 조망, 일조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방문 및 사이버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실 내 단지 및 세대 도면이 비치되어 있사오니 공급계약 체결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소방 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공사 진행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 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 자재(위생기구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 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보도 부분에 대한 관리는 입주민이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인허가에 따라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 차량 동선 등), 부대 복리시설(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 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 시공 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전주 보안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비상용 발전기(단지내 보행통로 내) 등 시설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진동, 연기,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사용상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는 지형의 특성상 단차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쓰레기는 단지 내 별도의 수거시설을 사용하며, 차량을 통한 수거 예정입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법적 소방시설인 옥내 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내부 및 주동 출입구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1층 및 지하층에는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피트니스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기계실, 전기실 등의 부속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용 급배기팬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되며, 팬 가동 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여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장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

- 어린이놀이터, D/A(설비 환기구), 쓰레기분리수거장,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진동·냄새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피뢰침, 태양광판넬, 이동통신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 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3672동, 3674동, 3677동, 3679동, 3681동, 3682동 옥상층에는 이동통신설비(중계장치)가 설치되며, 옥외안테나는 3672동 옥상에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 동 옥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설비는 3671동, 3672동, 3673동, 3674동, 3675동, 3676동, 3677동, 3678동, 3679동, 3680동, 3681동, 3682동 옥상층 및 3676동, 3677동, 3679동, 3680동, 3681동, 3682동 입면에 설치되며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 동 옥상 및 입면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방범용 동체 감지기는 지상 1층, 2층, 최상층에 설치됩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부 색채, 입면(창호 형태 등) 및 옥상구조물 등은 인허가 및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차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으며, 선풍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 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 시공 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 사양은 지하층, 로비층, 2층 이상의 기준층 엘리베이터 홀 마감사양이 상이합니다.
- 각 동과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측면에는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침해 등으로 사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 층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 동·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축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실외 노출 복도에는 소방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세대의 오배수 배관은 실외 노출 복도 천장속 공간에 설치되며 유지관리를 위한 천장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휴게공간은 외기에 면해있어 우천 시 비 들이침과 겨울에 눈이 쌓일 수 있으며,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내부 및 주동 출입구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 최하층 엘리베이터홀에는 실내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제습기가 설치되며 장비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 사이버 견본주택에 표시되는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및 가구 이외 별도의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전시품이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전기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 월 패드, 콘센트 및 스위치, 소방시설, 디퓨저, 바닥배수구 및 배선기구류 등의 위치와 사양 및 수량은 변경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 배관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 욕실 / 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샤시창은 이중 창호[PL창]가 설치되며, 창호 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열림 방향, 제조사, 디자인, 재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열 성능(TDR값 제외)은 동등 이상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하부 턱 높이 및 좌우 설치 위치는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는 기준층 기준으로 설치되었으며, 층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일부 세대에서는 발코니 배수 입상관이 시야확보 및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세대별 입상관 위치도 상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타입별로 발코니 및 실외기실 배수방식이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의 천장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 및 보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등박스의 크기, 커텐박스의 크기, 시스템에어컨(옴션 선택 시), 스프링클러 헤드, 원형 디퓨저 등 천장 부분이 변경(위치 및 깊이 등)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샤시 설치기준은 사이버 견본주택 또는 설계관련 도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사용 시 원활한 에어컨 동작을 위해 실외기실에 있는 그릴 창 및 방충망을 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 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빨래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전기, 설비 공사상 일부 노출 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감 자재 내용은 평형별, 주택형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사이버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설계 및 시공상의 이유로 세대의 모든 난간대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단위세대 커텐박스 위치와 높이, 사이즈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류)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 장 뒷면 또는 측면으로 가스 배관이 설치되므로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에어컨 개별 설치 시 제조사 사양에 따라 실내기 위치, 설치비용 등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일부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 배관(천장·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개별설치 시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대 환기 장비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 장비 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코니 천장높이 및 문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도면의 각 세대 주방 창호 크기는 창호 프레임 끝단 간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창호 프레임 일부가 마감재로 덮여 시공되므로 세대 내부에서 창호 크기가 실제 크기보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 건축법상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2층 이상 세대는 상부 세대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공간 및 대피를 위한 동선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제반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1층,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등) 및 필로티 상부층이 최하층일 경우 해당세대의 바닥에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필로티 상부층이 최하층일 경우 해당세대의 바닥에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나, 1층에 세대가 있는 2층의 경우는 설치가 됩니다.
- 타입별로 세대분전반, 통신 단자함, 월 패드의 설치 위치 기준이 상이합니다. 사이버 견본주택 등을 참조하시어 설치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발코니, 실외기실 등 천장에 구조를 위한 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실, 주방, 침실의 콘센트 중 일부는 대기 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됩니다.
- 공기질 센서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분양홍보물에 적용된 마감 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허 및 의장등록 또는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분양홍보물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미포함 품목이 혼합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단열공사 외 환기 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음)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 창호의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 개폐 방식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되는 마감재의 사양과 색상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불박이리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 및 빌트인가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 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벽걸이 TV설치 시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목재문, 가구 및 디자인 월 등의 인테리어 시트는 자체 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다용도실 및 실외기실 등 발코니 공간에는 별도의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침실 및 욕실 도어 프레임의 사이즈, 재질, 단차,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침실 및 욕실도어에는 손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되며,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된 목 창호의 하드웨어(경첩, 스토퍼, 등)와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우물천장의 깊이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아트월(타일), 디자인패널 등 패넬류의 마감재 나누기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 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렌지후드 상부장에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배치, 동선, 복도폭, 수납량 등은 세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및 벽체 마감재의 이음 부분이 노출되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욕실, 발코니 타일마감에 의한 줄눈 나누기는 사이버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타일 자체의 컬러나 문양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 상부 몰딩의 규격 및 형태, 재질이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통신 단자함 및 전기 분전반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과 디자인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내부 수납 치수 및 엔지니어드스톤 선반의 마감 디테일(치수,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높이는 설비, 전기 등의 배관, 배선 공사 시 기능상의 이유로 높이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옵션 미선택 시 거실에는 스탠드형, 침실1,2,3에는 벽부형 냉매배관 설치 및 에어컨 옵션 선택 시는 기본 제공되었던 냉매배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하부세대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실외기실(일부 세대 제외)에 설치될 예정이며, 피난상황이 아닌 임의로 하향식 피난구 개방 시 인한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 피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화재 시 피난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 해당 세대, 하부 1개 층 세대는 개폐 시 알람 경보가 울리게 됨)
- 타일 및 마감에 의한 줄눈나누기, 건축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 패드, 전기 분전반, 통신 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84) 변경으로 인해 세대 분전반이 세대 내 벽체에 매립되고, 분전반 커버는 노출 시공됩니다. 위치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본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세대 내 다용도실의 내부에 있는 세탁기 설치공간에 세탁기 이외의 건조기를 직렬로 설치 시 세탁기 뒤편에 창호가 있는 세대는 창호 개폐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후 발코니 및 빨래건조대, 벽걸이 TV 등의 설치 시 매립 배관 위치를 시공자가 관리소 보관 중인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 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내 벽체에는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 전열 기구 배관라인(보통 수직 형성)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래킷 고정 등 벽체 파손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
- 식탁용 팬던트는 제공되지 않으며, 식탁용 전등은 다운라이트로 제공됩니다.
-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구획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며, 관련 민원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냉장고 등 가전용 콘센트 위치는 각 타입의 냉장고장 위치를 기준으로 설치됩니다.(일부 타입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환기는 전열교환방식이며 환기장비는 하향식피난구실에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층 이상의 세대 하향식피난구실에 인접세대 대피를 위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단, 1개층 필로티 세대의 경우 3층 이상의 세대에만 설치됩니다.
- 기타 입주자모집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사이버 견본주택 및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관련 도서 등을 참조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유시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총 주차대수는 1,760대이며, 전기차 충전시설은 급속 20대, 완속(이동형충전기용 콘센트) 104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이용 시 주동으로의 진입이 불편한 세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및 램프 지붕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 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상 주차장까지 차량 동선이 단지 출입구를 통하여 진입하므로 입주자 차량과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레벨에 따라 주차장 3개층이 모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계획상 각 동별로 주차공간이 균일하게 계획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헬름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헬름 및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 주거 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옥상, 전실 및 홀 등은 주거 공용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화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질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하수도 사용료 포함)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가로수로 인한 조망 등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 외부에 볼라드, 가로등 보차로 구분용 휠스, 각종 게시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및 지상 주차장 주변부 녹지대는 면적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이버 견본주택 내 VR 모형,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재난, 안전, 소방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 따라 시공 시에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도서 상의 실선을 기준으로 구획되어 있고, 주차구획선 표기 시 좌우측 부분에 편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구역은 기본 일반주차 구역으로 설치되나, 현장여건에 따라 확장형 주차구역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 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시공 시 단지 주변의 레벨 변경에 따른 단지 내 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에는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소방시설 점검시 연료펌프 성능시험으로 인해 냄새, 매연, 소음 및 미세한 진동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공유창고는 공간만 제공되며,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협의체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운영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 통행은 지하 2, 3층만 택배차가 진입 가능하며 지하 1층은 진입이 불가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및 설계 관련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에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 단지과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구조개선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 인허가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도로,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VR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Mock up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샘플하우스(Mock up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하기로 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 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사이버 견본주택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 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 (2006.1.23 건설교통부)”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홍보물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사이버 견본주택내 VR모형도(단지 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거합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사업주체와는 무관하며, 사업 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기관의 사업으로 추진 중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내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 사이버 견본주택에서는 실제 건립세대(Mock-up 세대) 촬영영상(74B, 84A, 84B타입만 해당) 및 평면도(촬영영상 미제작 타입)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추가선택품목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DP)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 표현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전기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동영상 및 사진파일로 보관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 표현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PVC 창호, 목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공사과정 중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사이버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5항 및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견본주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증,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 주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변 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주변의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명칭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 법규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 아이소, 세대VR, VR모형, 사이버 견본주택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7. 마감자재 목록표

- 「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동탄 꿈의숲 자연& 데시앙 홈페이지(<https://동탄꿈의숲자연앤데시앙.com>)에 게시합니다.

8.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의 단열재 설치는 비난방공간과 면하는 난방공간의 외벽을 단열조치하여야 한다.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지역난방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0m 이상	지하 1층 2.3m, 지하 2층 2.7m, 지하 3층 2.7m (주차 구역은 최소 2.1m이상)	최고 2.7m

[단위 : 천원]

			구 분	총액	비고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251,659,821	
			기간이자	410,570	
			그 밖의 비용	610,637	
			계	252,681,028	
건축비	공사비	토목	토공사	9,241,415	
			우수·오수공사	2,135,518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54,569	
			도로포장공사	1,182,749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40,432	
			조경공사	9,823,384	
			부대시설공사	1,001,432	
			계	23,479,499	

		건축	공통가설공사	6,105,458	
			가시설물공사	13,752,206	
			지정 및 기초공사	6,841,741	
			철근콘크리트 공사	83,659,292	
			조적공사	7,072,945	
			미장공사	5,739,461	
			단열공사	9,484,298	
			방수·방습공사	8,252,784	
			목공사	9,597,486	
			가구공사	3,628,522	
			금속공사	2,536,069	
			지붕 및 흙통공사	541,570	
			창호공사	11,554,941	
			유리공사	4,626,966	
			타일공사	8,651,988	
			돌공사	9,019,908	
			도장공사	3,914,996	
			도배공사	2,542,634	
			수장공사	8,324,118	
			그 밖의 건축공사	2,184,951	
			계	208,032,334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4,748,092	
			급탕설비공사	3,179,655	
			오·배수설비공사	5,328,801	
			위생기구설비공사	2,845,706	
			난방설비공사	4,205,629	
			가스설비공사	1,617,122	
			자동제어설비공사	1,123,001	
			특수설비공사	790,593	
			공조설비공사	2,937,514	
			계	26,776,113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17,576,958	
			정보통신공사	9,691,967	
			소방설비공사	13,305,921	
			승강기공사	5,256,660	
			계	45,831,506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8,758,888	
			이윤	15,662,929	
			계	24,421,817	
		간접비	설계비	5,334,083	
	감리비		10,788,519		
	일반분양시설경비		3,586,087		
	분담금 및 부담금		1,626,193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3,506,071		
	계		24,840,953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555,950		
합계			607,619,200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가. 대화감정평가법인	나. 나라감정평가법인
251,659,821,286원	249,278,182,598원	254,041,459,973원

11.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가산비									
택지비 기간이자	흙막이 공사비	말뚝박기 공사비	기타 비용	소계	법정초과복 리시설 설치비용	인텔리전트 설치 추가비용			친환경 주택건설 가산비	지하 주차장 충고증가 공사비	법령·조례 에 따른 추가건설 가산비	사업승인 조건 충족 가산비		소계
						홈 네트워크 설치비	에어컨 냉매배관	기계 환기설비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법정초과 조경 설치비	입면마감 특화
8,878,724	2,628,211	9,095,917	1,482,189	22,085,041	2,300,783	11,379,212	3,137,950	5,966,190	4,525,568	1,326,397	583,487	1,837,463	2,590,923	33,647,973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산출근거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산출됩니다.

12.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설사업관리(건설, 통신, 소방)	전기 감리
상호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주)팜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건창엔지니어링	(주)천도엔지니어링
금액	23,319,190,000원	1,646,102,980원

※ 감리회사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건설사업관리(건설, 통신, 소방)용역 및 전기감리용역은 화성동탄2 A76-2BL 및 A78BL 통합 용역 계약 금액입니다.

13. 사업주체 현황

■ 사업주체 현황

구분	공공시행자	민간사업자		
상 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태영건설	극동건설(주)	우미건설(주)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이의동)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일직동)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5, 501호 (대연동, 세웅빌딩)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 2층(우산동)
법인등록번호	130171-0000052	110111-0155451	110111-0027858	205211-0001385

※ 본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주)태영건설, 극동건설(주), 우미건설(주)가 공동사업주체로 시행하며, 분양계약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전 사업주체를 경기주택도시공사 단독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공사

구분	시공사		
상 호	(주)태영건설	극동건설(주)	우미건설(주)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일직동)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5, 501호 (대연동, 세웅빌딩)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 2층(우산동)
법인등록번호	110111-0155451	110111-0027858	205211-0001385

14. 견본주택 및 공식 홈페이지 안내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47-5
	운영시간	10:00 ~ 17:00
	분양문의	031-373-1780
	공식 홈페이지 (사이버 견본주택 등)	https://dongtandreamforest.natureanddesign.com